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335

발의연월일: 2021. 1. 13.

발 의 자: 안호영·김윤덕·장철민

송옥주 • 양이원영 • 윤미향

임종성ㆍ이수진비ㆍ윤준병

양정숙 · 노웅래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

사업장에서의 자율적 재해예방 조치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 지도·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안 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나,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령에 두고 있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한편, 여러 관계수급인이 동시에 작업을 하는 건설공사에서 화재·폭발사고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혼재 작업으로 인한 위험이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·내용 및 안전·보건조치 등을 확인 또는 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으로 상향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, 도급인에게 혼재 작업

시 조정의무를 부과하여 현재 제도 운영 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,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(안 제17조제3항, 제18조제3항 및 제175조제5항제1호).
- 나.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이 혼재되어 화재·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·내용,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을 확인 또는 조정하여야 함(안 제64조제1항제7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64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이 혼재되어 화재·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·내용, 안전 및 보건 조치등의 확인 또는 조정

제175조제5항제1호 중 "제17조제1항, 제18조제1항"을 "제17조제1항·제 3항, 제18조제1항·제3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안전관리자) ①・② (생	제17조(안전관리자) ①・② (현행
략)	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
	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
	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
	하도록 하여야 한다.
<u>③</u> · <u>④</u> (생 략)	<u>④</u> ・ <u>⑤</u>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
	같음)
제18조(보건관리자) ①・② (생	제18조(보건관리자) ①・② (현행
략)	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
	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
	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
	하도록 하여야 한다.
<u>③</u> · <u>④</u> (생 략)	<u>④</u> ・ <u>⑤</u>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
	같음)
제64조(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	제64조(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
방조치)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	방조치) ①
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	
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	
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	<u>.</u>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.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
	건설공사에 있어서 관계수급

②·③ (생 략)

제175조(과태료) ① ~ ④ (생략)

-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제15조제1항, 제16조제1항, 제17조제1항, 제18조제1항, 제18조제1항, 제19조제1항 본문, 제22조제1항 본문, 제24조제1항 · 제4항, 제25조제1항, 제26조, 제29조제1항 · 제2항(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31조제1항, 제32조제1항(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), 제37조제1항, 제44조제2항, 제49조제2항, 제49조제2항, 제60조제3항, 제62조제1항, 제66조, 제68조제1항, 제75조제6항, 제77조제2항, 제90조제1항, 제94조

<u>인</u>	등	의	작업	0	혼7	새되	어	화
<u>재</u>	• 폭	발	등	대통	통령i	령으	.로	정
하.	늗	위형	글이	발	생힐	<u>}</u> _9	우려	<u>가</u>
있	는 7	경우	관	계수	-급(인의	직	업
<u>시</u>	7] •	내용	ġ.,	안전	. 및	보	건	조
<u>치</u>	등의	의	확인	또	는 ;	조정	<u> </u>	
.	(2)	(처 :	해 기	しった	(ك.			

있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작업
시기·내용, 안전 및 보건 조
치 등의 확인 또는 조정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75조(과태료) ① ~ ④ (현행과
같음)
⑤
1
<u>제17</u> 조제1항·제
3항, 제18조제1항·제18조제3
ठॅ)

제2항, 제122조제2항, 제124조 제1항(증명자료의 제출은 제 외한다), 제125조제7항, 제132 조제2항,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

- 2. ~ 16. (생 략)
- ⑥・⑦ (생략)

- 2. ~ 16. (현행과 같음)
- ⑥·⑦ (현행과 같음)